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기찬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51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최기찬, 채인묵 의원 (2명)

찬 성 자 : 고병국, 우형찬, 유 용,
이광호, 김경우, 정진술,
오한아, 김종무, 김정환,
송정빈, 문장길, 이정인,
조상호, 신정호, 정재웅,
김희걸, 박순규, 김기대,
김평남, 박기열, 홍성룡,
전석기, 송재혁, 봉양순,
채유미, 김 경, 이승미,
장인홍, 노식래, 추승우,
이태성, 이준형, 이성배,
이현찬, 권영희, 임종국 의원 (36명)

1. 제안이유

- 가.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(이적지 포함)에 공동주택 사업 시 일정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, 설치되는 산업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산업부지 확보비율이 적용되고 있음
- 나. 이에,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또는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에서 규정한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일부 완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 및 교육 시설 건립을 유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산업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규정 신설 (안 별표2 2. 라.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 2. 라.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[별표2]

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(이적지 포함)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(제35조제 1호 관련)

2. 산업부지 확보비율

라. 제3호다목에 따른 산업시설 중 「의료법」 제3조의3 종합병원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산업시설 확보비율을 1단계(10%) 하향하여 완화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[별표2]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(이적지 포함)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(제35조제1호 관련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산업부지 확보비율 가. ~ 다. (생략) 라. (신설)</p> <p>3. ~ 4. (생략)</p>	<p>[별표2]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(이적지 포함)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(제35조제1호 관련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산업부지 확보비율 가. ~ 다. (생략) 라. <u>제3호다목에 따른 산업시설 중 「의료법」 제3조의3 종합병원 또는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산업시설 확보비율을 1단계 (10%) 하향하여 완화할 수 있다.</u>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